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찬성자 : 33명)

나. 의안번호 : 제 2930 호

다. 발의일자 : 2025. 8. 11.

라. 회부일자 : 2025. 8. 14.

2. 제안이유

- 주민협의회 주민대표 추천, 위원장 선출 규정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2항).
- 나. 5·18 민주유공자, 고협제후유의증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 조항 등을 수

정함(안 제5조의2제3항).

다.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하여 보다 현실화함(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국가보훈기본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8. 20.~08. 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주민대표 추천, 위원장 선출 규정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가. 주민협의회¹⁾ 구성·운영 규정 정비(안 16조, 제18조제2항)

- 안 제16조 중 제1항 및 제2항은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한편,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현행 조례가 위원장 선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주민협의회의 운영 인원과 위원장 선출 절차를 명문화하여 민주성과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표 1]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신설>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1. - 2. (생략)

<신 설> <u>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u> 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u>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지방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u>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u>이공계분야</u>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다만, <u>주민대표가</u>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 <u>② 위원장은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u> <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 1. ----- ----- <u>주변영향지역 또는 같은</u> ----- ----- <u>주민대표 8명 이내</u> 2. ----- ----- <u>이공계 분야</u> ----- ----- ----- -----(<u>위원장이</u> -----). -----).
---	---

- 안 제16조제3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6조 본문 및 각 호를 안 제16조제3항 및 각 호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먼저, 안 제16조제3항 본문은 현행 조례 제16조 본문에서 시장이 주민협의회 주민대표를 위촉할 때 해당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했던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 이는 안 제16조제3항제1호(종전 제16조제1호)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할 때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어 굳이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16조제3항제1호(종전 제16조제1호)는 주민대표 추천인 자격을 현행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에서 주변영향지역²⁾ 거주 세대주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민협의회 위원 10명 중 주민대표의 수가 안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 2명을 제외한 8명 이내로 운영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 이 중 주민대표 추천인 자격요건을 주변영향지역 거주 세대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16조제1호에서 주민대표로 추천할 수 있는 자를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로만 한정하고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행정동과 물재생시설의 행정동이 상이할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추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16조제3항제2호는 현행 조례 제16조제2호에서 주민협의회 전문가 추천 요청의 주체를 ‘주민대표’로 규정하던 것을 주민대표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선출 규정 등이 정비된 바 대표성을 가진 자로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 안 제18조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주민협의회회의 회의 소집 주체를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6. (생략)

‘위원장’으로만 규정하던 사항에 ‘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이는 물재생시설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 측면에서 주민협의회에 부칠 긴급한 현안 안전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표 2]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생략)	제1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협의회 회의는 <u>위원장이</u>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 <u>시장이나 위원장이</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편익시설³⁾ 사용료 감면대상 및 산정 체계 정비

(안 제5조의2제3항, 별표 2, 별표 3)

- 안 제5조의2제3항제2호의 신설은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조례 별표 3의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를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례 본문에도 신설하여 별표 3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안 별표 3에서의 해당 감면율을 100%로 확대(기존 60%)하려는 것([표 5] 참조)으로,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 이는 교육·공공 목적을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

[표 3]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5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생략)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별표3</u> 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 ----- <u>별표3</u> 의-----.
1. <u>서울시가</u> 주관하는 행사 (신설)	1. <u>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u> -----
3. <u>지역주민</u>	2. <u>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주관하는 행사</u>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	3. <u>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u>
4.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준수차량	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5. (생략)	5. -----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한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④ ~ ⑥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제5조의2제3항제3호는 편익시설 감면대상인 “지역주민”을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실무상, 해석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할 것임.
- 안 제5조의2제3항제4호는 기존 편익시설 감면대상인 전상·공상 군경 등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확인증명서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⁴⁾”으로 통합·개선('23.6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⁵⁾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반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에 대한 감면기한이 종료(2019.12.31.)됨에 따라 이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여기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자로 감면대상을 일원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감면대상(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외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⁶⁾의 관계법령⁷⁾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4)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5)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6)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각 유족, 제대군인(장기복무/중기복무),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이 새로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임.

- 안 제5조의2제3항제5호는 편익시설 감면대상 차량 중 안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맞춰 현행 조례 제5조의2제3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량을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차량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요일제 준수제가 폐지(2022.12월)됨에 따라 요일제 준수차량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안 별표 2는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에 대해 사용료와 관련하여 전용사용료, 주말할증, 사물함 임대료 등 세부 항목을 삭제하여 요율표의 간소화를 통해 현실화하는 등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표 4] 신·구조문 대비표(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별표 2] 사용료(제5조의2 제1항 관련) □ 체육시설		[별표 2] 사용료(제5조의2 제1항 관련) □ 체육시설	
구분	기준 및 사용료	구분	기준 및 사용료
테니스장	- 개인사용료(1면 1시간 기준)	테니스장	- 개인사용료(1면 1시간 기준) 5,000~7,500원
	· 평일 5,000~7,500원		- 조명사용료(1시간 기준) 5,000~7,500원
	· 토, 공휴일 6,500~9,750원		
	- 전용사용료(1면 1일 8시간 기준)		
	· 평일 40,000~60,000원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토, 공휴일 52,000 ~ 78,000원 - 조명사용료(1시간 기준) 5,000 ~ 7,500원 - 사물함 임대료 4,000 ~ 6,000원/월
탁구장	- 1일(1면 2시간 기준) 3,000 ~ 4,500원 - 1개월(1일 2시간 기준) 20,000 ~ 30,000원
파크골프장	- 개인사용료 (9홀 기준) 3,000 ~ 4,500원 - 물품대여료 1,000 ~ 1,500원

□ 주차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주차장	- 1회주차(10분당) 200 ~ 300원 - 월정기권(비거주차) · 전일(24시간) 70,000 ~ 105,000원 · 주간(08:00 ~ 19:00) 50,000 ~ 75,000원 · 야간(18:00 ~ 익일09:00) 20,000 ~ 30,000원

탁구장	- 1일(1면 2시간 기준) 3,000 ~ 4,500원
파크골프장	- 개인사용료(1회, 2시간 기준) 3,000 ~ 4,500원 - 물품대여료 1,000 ~ 1,500원

□ 주차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주차장	- 1회주차(10분당) 200 ~ 300원 - 월정기권(비거주차) · 전일(24시간) 70,000 ~ 105,000원 · 주간(08:00 ~ 19:00) 50,000 ~ 75,000원 · 야간(18:00 ~ 익일09:00) 20,000 ~ 30,000원

- 현재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⁸⁾’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으며, 전일 또는 월 단위 예약은 받고 있지 않고 파크골프장의 경우 예약시스템상 실질적으로 2시간 기준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세부 항목(전용사용료, 주말할증, 월사용료 등)을 없애고 현장 운영에 맞추어 기준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를 통해 이용자 측면에서 사용료가 단순화됨에 따라 요금 산정이 명확해지고, 사물함 임대료와 같은 추가 부담이 사라져 실질 이용료 부담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안 별표 3은 안 제5조의2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정비하면서, 당초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서 “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시한 자”로 변경하는 한편, 일부 항목(안 제5조의2제3항제2호 관련)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8) <https://yeyak.seoul.go.kr/web/main.do>

- 이 중 감면대상 증빙과 관련하여 “소지”에서 “제시”로 변경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혜택 적용이 가능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 신·구조문 대비표(안 별표 3)

현행	개정안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 (%)</th></tr> </thead> <tbody> <tr> <td>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td><td>100</td></tr> <tr> <td>(신설)</td><td></td></tr> <tr> <td>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td><td>50</td></tr> <tr> <td>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td><td>50</td></tr> <tr> <td>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td><td>50</td></tr> <tr> <td>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td><td>50</td></tr> <tr> <td>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td><td>50</td></tr> <tr> <td>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신설)</td><td></td></tr> <tr> <td>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td><td>60</td></tr> <tr> <td>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td><td>10</td></tr> </tbody> </table>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신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신설)		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 (%)</th></tr> </thead> <tbody> <tr> <td>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td><td>100</td></tr> <tr> <td>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td><td>100</td></tr> <tr> <td>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삭 제)</td><td></td></tr> <tr> <td>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삭 제)</td><td></td></tr> <tr> <td>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삭 제)</td><td></td></tr> <tr> <td>(삭 제)</td><td></td></tr> </tbody> </table>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삭 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삭 제)		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삭 제)		(삭 제)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신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신설)																																																									
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삭 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삭 제)																																																									
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삭 제)																																																									
(삭 제)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
되 목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신설)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 한 성실납세증(발행 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 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 우	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 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 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 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 함)	30
(신설)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 는 주차요 금의 경우 50)

※ 비교: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
되 목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 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 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 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 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 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삭 제)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삭 제)	
8.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삭 제)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 는 주차요 금의 경우 50)

※ 비교: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 기타 용어 정비 등

(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2호, 별표 1)

- 안 제2조2호는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하수도법」 제2조제1호9)에 따른 하수”로, “관거”를 “관로”로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표 6]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차집 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 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차집관로”라 함은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차집하여 ----- 관로와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 「하수도법」 제2조제6호10)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하천 등에 이송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부속시설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 현행 조례의 “차집 관거”는 과거 행정용어로 현재 법령에서는 “관

9)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 15. (생략)

10)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 15. (생략)

로”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사료됨.

- 안 제5조제1항은 본문 중 “주민협의회”를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7]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u>주민협의회</u> 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 -- <u>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u> 와-----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제7조제2항제2호는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안 제2조제2호의 용어정비와 동일한 취지임.

[표 8]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7조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관리·운영의 대행)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하수처리구역내 <u>차집관거</u>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 7. (생략) ③ (생략)	제7조(관리·운영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차집관로</u> ----- -----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안 별표 1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과거 행정 용어로 현행 「하수도법」 제2조제9호¹¹⁾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법률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용어 일치, 시대에 맞는 용어 사용으로 공공기관 명칭을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표 9]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7조2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물 재 생 시 설				물 재 생 시 설			
시 설 별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시 설 별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 랑 물 재 생 시 설	<u>하수종말처리시설</u>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구 송정동 73일대	중 랑 물 재 생 시 설	<u>공공하수처리시설</u>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구 송정동 73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u>차 집 관 거</u>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u>차 집 관 로</u>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탄 천 물 재 생 시 설	<u>하수종말처리시설</u>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일대	탄 천 물 재 생 시 설	<u>공공하수처리시설</u>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일대
	분뇨처리시설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분뇨처리시설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u>차 집 관 거</u>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u>차 집 관 로</u>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서 남 물 재 생 시 설	<u>하수종말처리시설</u>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일대	서 남 물 재 생 시 설	<u>공공하수처리시설</u>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일대

11)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 15. (생략)

		처 리 하 여 하천에 방 류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 정하게 처 리	
	<u>차 집 관 거</u>	하수를 처 리장으로수 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 로 또는 처 리 장 으 로 수송	
난 지 물 재 생 시 설	<u>하수종말처리시설</u>	하수를 방 류수질 기 준 이내로 처 리 하 여 하천에 방 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현천동 673-2일 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 정하게 처 리	
	<u>차 집 관 거</u>	하수를 처 리장으로수 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 로 또는 처 리 장 으 로 수송	

		처 리 하 여 하천에 방 류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 정하게 처 리	
	<u>차 집 관 로</u>	하수를 처 리장으로수 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 로 또는 처 리 장 으 로 수송	
난 지 물 재 생 시 설	<u>공공하수처리시설</u>	하수를 방 류수질 기 준 이내로 처 리 하 여 하천에 방 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현천동 673-2일 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 정하게 처 리	
	<u>차 집 관 로</u>	하수를 처 리장으로수 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 로 또는 처 리 장 으 로 수송	